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3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송기헌・신정훈・임호선

송언석 · 이광재 · 안호영

송재호·위성곤·윤재갑

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에 대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 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 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 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 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을 "간선시설(幹線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
자) ① (생 략)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②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	
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	
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	
여 적용한다.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1
개발구역 밖의 <u>간선시설(幹</u>	간선시설(幹線
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	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
<u>서관·문화회관·운동장</u> 등 공	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
공편익시설의 설치	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 2. (생략)
- ③ ~ ⑥ (생 략)
-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지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u> 등 공공편익시설

- 3. (생략)
- ③ ④ (생 략)

<u>기 근</u>
_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